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13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김정호·허종식·최기상

정성호 • 윤후덕 • 이연희

신영대・박 정・이소영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 규정이 없어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에 합치되는 이용 형태인 영농형 태양광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 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 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 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9호, 제36조의3 신설 및 제59조제2호의2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지의 복합이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3(농지의 복합이용허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경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2. 시설의 규모·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농지전용허가,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로 한다.

2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9. "농지의 복합이용"이란 농지 |
| | 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 |
| | 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 |
| | 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이용 |
| | 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 |
| | 하는 것을 말한다. |
| <u> <신 설></u> | 제36조의3(농지의 복합이용허가) |
|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 |
| | 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려는 |
| | <u>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제34조</u> |
| |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 |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 |
| | 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 |
| | 으려는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
|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
|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
| |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
| | <u>도 또한 같다.</u> |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 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 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 량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 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

-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 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아 니한 자경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2. 시설의 규모·종류 등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 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
| 일시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 |
| 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허가- |
| |
| |
| |
| |
| |
| |
| |
| |
| |

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 소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② (생 략)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신 설>

3.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59조(벌칙)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2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농 |
| 지의 복합이용허가를 받지 아 |
| <u>니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u> |
| 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 |
| |

을 한 자

3. (현행과 같음)